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
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,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보훈의료 국비 지원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약제비용”을 “약제비용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: 약제비용의 전액. 다만, 제33조의2 본문에 따른 본인 부담분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(약제비용의 부담) ①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34조제1항·제2항·제5항 또는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<u>약제비용</u> 을 국가가 부담한다.	제35조(약제비용의 부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약제비용</u> 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
1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: <u>약제비용의 전액</u>	1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: <u>약제비용의 전액</u> . 다만, 제33조의2 본문에 따른 본인 부담분은 제외한다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44